

연천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2007. 1. 22〕 훈령 제402호

일부개정 2007. 7. 6 훈령 제410호
일부개정 2011. 5. 6 훈령 제446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2. 8. 27 훈령 제467호
일부개정 2013. 1. 10 훈령 제470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3. 5. 10 훈령 제477호
일부개정 2015. 2. 22 훈령 제492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5. 6. 10 훈령 제494호
일부개정 2019. 3. 4 훈령 제527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20. 2. 26 훈령 제542호
일부개정 2024. 2. 15 훈령 제5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5>

1. “공무원 휴양시설”(이하 “휴양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민간기업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회원권을 구입하여 별표에 명시된 것
 - 나. 그 밖에 군에서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은 콘도, 펜션 등 휴양을 위한 숙박업소
2. “성수기”라 함은 여름의 경우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의 경우는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각 콘도에서 성수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이용대상자)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연천군의회 의원

3. 군 소속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무원근로자

4.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금강산 콘도 2구좌를 1회 이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휴양시설의 이용 및 관리 등의 주관부서는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24. 2. 15>

제6조(이용기준) ① 이용자는 휴양시설을 연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2. 15>

1. 제2조제1호나목의 휴양시설을 이용한 경우

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휴양시설 이용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최대 2실에 한하여 우선하여 콘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

3. 직원동호회가 차관급 이상의 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제7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휴양시설(제2조제1호가목의 휴양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의 이용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예약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성수기: 성수기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예정일의 30일 전까지

3. 평일: 이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② 주관부서에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휴양시설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③ 신청인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주관부서에서 회원카드(이용권을 포함한다)를 수령하고, 휴양시설의 이용 후 이를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관부서에 알리고 그 사유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변경 및 취소) ①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기간 내 이용이 어렵거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주관 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변경 및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사망이나 결혼에 한정한다)에 참석하는 경우
2. 재난, 재해 등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제8조의2(이용료 신청) 휴양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는 이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지원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5]

제9조(이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휴양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1.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한 경우
2. 휴양시설의 이용 과정에서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② 휴양시설 내에서 지나친 음주, 퇴폐, 향락 등의 추태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휴양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제10조(지원범위)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료에 한정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 2. 15]

제11조(회원권의 유지 및 관리) 주관부서는 매월 이용료를 정산하고 휴양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부칙 〈2020. 2. 26 훈령 제542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5 훈령 제567호〉

이 규정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천군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콘도명	규모	구좌수	이용일수(박)	계약기간	비고
계		41	1,230		
소노	22평(28평)형	6	180	2004.2.~2024.2.	구 대명리조트
	22평형	5	150	2013.2.~2033.2.	
	패밀리형	3	90	2020.1.~2040.1.	
일성	22평형	6	180	2003.6.~2023.6.	
금강산	27평형	5	150	2003.6.~2023.6.	
토비스	25평형	5	150	2003.6.~2023.6.	
현대수	23평형	4	120	2004.3.~2024.3.	
한화	18~32평형	3	90	2013.3.~2033.3.	
	패밀리형	3	90	2020.1.~2040.1.	
호반	24평형	1	30	2013.3.~2038.3.	구 리솜리조트

